

코로나 19 극복!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
2.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3
3. 신용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 4
4. 기술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 5
5.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6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6. 고용유지지원금 ..... 7
7.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8
8.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11
9. 구직급여 ..... 12
10.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 13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1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14
12. 내일키움 일자리 지원 ..... 15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13. 아동특별돌봄지원 ..... 16
1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17
15.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18
16.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 19

- ※ 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 20

# 1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 □ 지원대상요건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집합제한\*\*된 소상공인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일~)에 따른 PC방,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0.8.30일~)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0.8.30일~)에 따른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 □ 지원내용

- (일반업종) 100만원
-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 지원시기

- 국회에서 예산 확정되는 대로 신청 대상 후보자\*에게 통보(SMS)  
→ 본인지원 신청시 심사없이 지급 예정(추석前 지급 개시)

\* 행정정보(국세청, 건보 등)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신청 접수·지급 가능

## □ 지원절차

### ① '20.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 (지원여부 확인) 행정정보(부가세매출신고 등)를 통해 매출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통지
- (신청) 온라인(소진공 홈페이지\*)·오프라인(지자체)을 통해 신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 구축 예정
- (수령) 신청시 제출한 카드 또는 계좌로 자금 입금
- (사후확인)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증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지급 요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금 반납

### ② '20.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

- (신청)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소진공 홈페이지)·오프라인(지자체)을 통해 신청
  - \* 매출감소 증빙서류(예시) :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신용카드 매출액,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 매출액 등
- (심사) 6~7월 평균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확인
- (수령) 신청시 제출한 카드 또는 계좌로 자금 입금
- (사후확인)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증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지급 요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금 반납

## 2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 지원대상·요건

- 코로나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일 기준, 2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8.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대상

### □ 지원내용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취업·재창업 관련 소정의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급

### □ 지원시기

- 국회 확정 즉시 접수 개시, 재취업·창업교육 이수 후 지급

###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진공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 병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 구축 예정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자격검증 → 보조금 지급

- (필요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3

## 신용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 지원대상·요건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매출액 감소, 휴업 등)를 입은 중소기업

\*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한 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

### □ 지원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기간	▪ 1년(필요시 만기연장 가능)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0.3%p 차감하되, 최대 1.0% 적용
지원총량	▪ 1.5조원

### □ 지원시기

○ 국회 확정 즉시 보증 접수 및 지원

### □ 지원절차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신청 후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절차(통상 1~2주 소요)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 결정

※ (첨부서류) 결산서, 재무재표

## 4

## 기술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 □ 지원대상·요건

- ①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②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③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기간	▪ 1년 (필요시 만기연장 가능)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1.0% 고정보증료율
지원총량	▪ 0.9조원

### □ 지원시기

- 국회 확정 즉시 신청접수 및 보증지원

### □ 지원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온+오프라인)에 신청 후 서류접수, 현장조사, 보증심사 절차(통상 1~2주 소요)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 결정

※ (첨부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5

##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

### □ 지원대상·요건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지원내용

구분	대출기간(년)	대출한도	금리	지원규모
일반업종	운전 : 5(2)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2.15%	2,000억원
집합금지업종			1.5%	1,000억원

\* 대출기간의 괄호는 거치기간

### □ 지원시기

- 국회 확정 즉시 신청접수 및 용자지원

### □ 지원절차

-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중진공 앰블런스맨(7영업일 이내 지원결정)을 통해 신속지원 예정



## 6

# 고용유지지원금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

### □ 지원대상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하는 경우
- \*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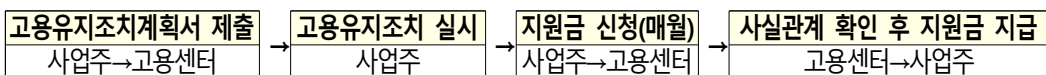
###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 연 **240일**(‘20년 한시) 이내 지원
- \* 일반업종은 9월3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 동안 1일 한도 **7.0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16.7.1.~’20.12.31.),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사·국제회의(‘20.4.27.~’21.3.31.)
  - ▶ 우선지원대상기업 : ①제조업 500인 이하, ②보건업·건설업 등 300인 이하, ③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200인 이하, ④기타업종 100인 이하

### □ 지원시기

-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상시)
  - \*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서 제출 필수
- (지급) 휴업·휴직 실시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 □ 지원절차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http://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문의: 국번없이 1350)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검색)

7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비용 지원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복규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소득요건) ①'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②'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8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우선순위) ①연소득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소득 감소규모 큰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이미 받은 특고 등(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 지원시기 및 절차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자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추경 통과 후 약 2주간 심사인력 선발·교육, 지원금 신청·심사시스템 보완 등 준비

##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 예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② 특고·프리랜서 업종 및 소득확인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구직 지원

### □ 지원대상·요건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등)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 지원내용

- 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훈련 연계 제공

### □ 지원시기 및 절차

- (안내) 신청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자 발송(추가경정예산 통과 직후)
  - \* 추가경정예산 통과 후 약 3주간 심사인력 선발·교육, 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준비

- (신청) 온라인 신청 개시(10.12.~24, 2주간)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http://www.youth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심사 및 지급\*(11.30까지 지급완료)

※ (첨부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휴·폐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을 주장할 경우)

# 9

## 구직급여

◆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 □ 지원대상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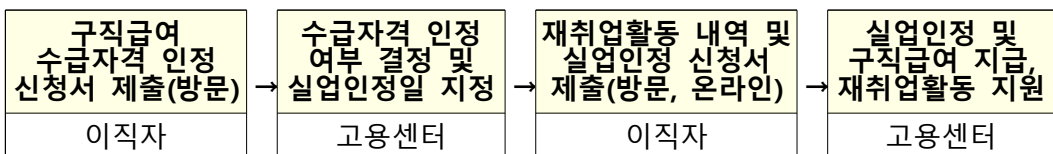
### □ 지원내용

-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 '20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30,060원(4시간 이하) ~ 60,120원(8시간) 지급

### □ 지원시기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후에 8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 \*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최초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이후부터는 통상 **4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역 및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방문 또는 인터넷)하고 구직급여 수혜

### □ 지원절차



-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고통·생계 지원을 위해 공공일 자리를 제공
- (방역) 지역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준수 단속 보조요원 등
  - (재해 복구)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해복구 지원
  -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및 주민 생계 지원 목적의 일자리

### □ 지원대상·요건

-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
  - ※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우선선발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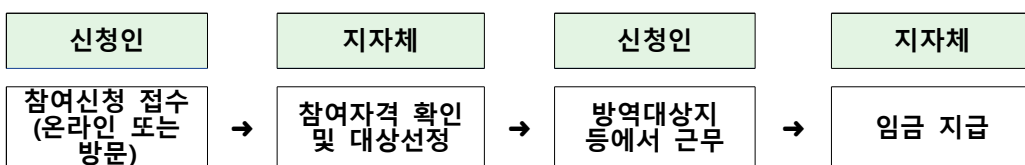
- 시급 8,590원(최저임금), 월 67~180만원(주 15~40시간)
  - ※ 4대 보험료 별도

### □ 지원시기

- 지자체별 모집공고(9~10월)
  - 각 지자체가 지원 분야, 근무시간, 근무지 및 근무조건, 급여 지급일 등 지자체별로 세부내역을 설계하여 공고

### □ 지원절차

-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등) 및 지참서류(신분증 등)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가능)



# 11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코로나19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 사각지대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원

###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존 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와 특별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대상자 제외

- (지원요건) 긴급복지 지원기준 준용하되, 재산기준 대폭 완화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원)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 □ 지원내용

- 1인 40만원, 4인 100만원 1회 지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 지원시기

- 온라인 접수(9월말), 현장 접수\*(10월) → 요건 심사 후 지급

\* 업무처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 중순 이후 읍면동 현장 신청접수

### □ 지원절차

-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소득 재산조사 등 확인(시군구) → 지급결정(시군구)

※ 신청 증빙서류 : 신청서, 소득감소확인서류,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등

- ◆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의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 □ 지원대상요건

-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 \*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참여 불가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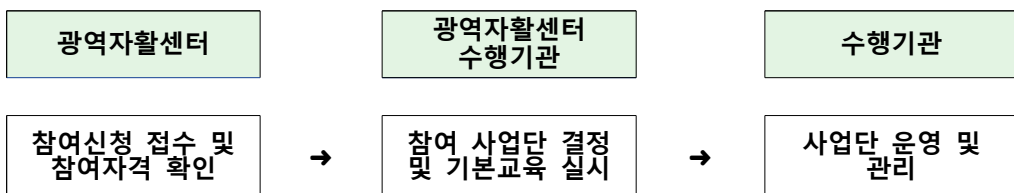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의 근로경험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 지급(2개월, 주 40시간 기준 월 **180만원**)

### □ 지원시기

- 참여신청 접수(10월~), 소득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후 적격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급여 지급(11월~)

### □ 지원절차

- 전국 **15개 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접수



\* 광역자활센터가 없는 세종, 제주는 거점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 제공

### □ 지원대상·요건

- 초등학교 이하 아동('20.9월 기준, '08.1.~'20.9. 출생아)

###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20만원**, 계좌(현금) 지급

### □ 지원시기

- 미취학 아동(252만명) 및 초등학교(270만명) **9월 내 지급**  
\* 학교 밖 아동은 안내, 신청·접수, 지급처리기간 등 감안, **10월 내 지급** 예정

### □ 지원절차

- (지자체)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교 제외)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20.9월 기준)로 일괄 지급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08.1.~'13.12. 출생아)
  - (초등학교)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K에듀파인) 통해 지급  
\* 스쿨뱅킹 미등록 부모에게는 사전 안내하여 등록 진행
  - (학교 밖 아동)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 받아 지급  
\* 신청 공고시 구체적 증빙서류 안내 예정  
(예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14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휴교·휴원으로 기존 돌봄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만 8세 이하(육아휴직 연령 기준) 아동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등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유급 휴가 최대 3일 있음)

### □ 지원내용

- 연간 1인당 최대 15일\* 이내, 1일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 단,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최대 10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0일)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 최대 20일(한부모 25일)  
→ 20일 중 최대 15일간(한부모 20일) 정부 비용지원

- ① 올해 돌봄비용 10일 미만 수령자 : 최대 15일 중 기존 지원 기간 제외한 잔여 일수 지원 (예: 8일 지원받은 경우, 최대 7일 지원)
- ② 올해 돌봄비용 10일 수령자 : 최대 5일 추가 지원

### □ 지급절차

-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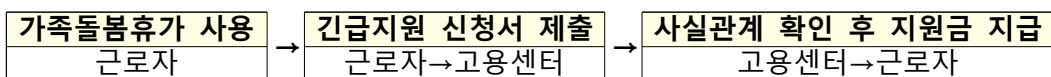
① 올해 돌봄비용 10일 미만 수령자 : 상시 (기존 시스템)

② 올해 돌봄비용 10일 수령자 : 9월 28일 이후 (시스템 개편 필요)

※ 위 내용은 돌봄비용 신청 가능시기로, 돌봄휴가 사용 가능시기와 별개

- (지급) 휴가 사용 후 신청서 제출 →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

### □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신청(문의: 국번없이 1350)

※ (첨부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유 증명자료(휴원·휴교 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 등)

###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장려금) 지원

####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②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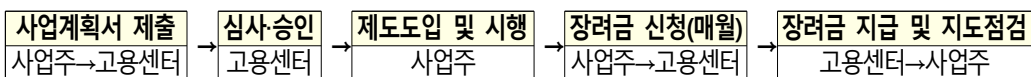
#### □ 지원내용

- 활용 근로자 1인당 주 3회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年 최대 520만원)
- \*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 □ 지원시기

- (접수) 사업계획서 연중 상시 접수
- (지급) 접수 후 **1월** 이내 사업계획서 승인 → 제도도입 및 시행 후 장려금 신청 →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

#### □ 지원절차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문의: 국번없이 1350)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제도활용 전·후 근로 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실근로시간 확인서류 등

◆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 증가를 뒷받침하도록 청소년 이상 전국민 약 **4,640만명**의 통신요금 **2만원** 할인 추진

- 청소년 :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학습수요 증가에 대응한 통신비 지원
- 청장년 : 대학생 원격수업, 청년 구직활동, 중장년 원격근무 등 지원
- 노년층 :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 지원

□ 지원대상요건

- (연령)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기준) 9.23일(수, 잠정)까지 본인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이용중인 자

\* 청소년, 어르신 등이 부양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비용없이 명의변경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2만원 정액지원**(1개월 원칙)

□ 지원시기

- 원칙적으로 **9월분 이동통신요금 감면** 예정(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

\*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에 미달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하여 다음달로 이월 등을 통해 최대 2만원 정액감면 추진

□ 지원절차

-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 기존 가입자 : 별도 신청 불요  
→ 9월분 요금청구내역에서 자동 감면
- 신규 가입 또는 명의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  
→ 9.23일(수, 잠정)까지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자동 감면

## 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❶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a href="http://www.semas.or.kr">www.semas.or.kr</a> )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장보영 과장 (044-215-7310)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은청 과장 (042-481-4408)	송제훈 사무관 (042-481-4425)
❷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a href="http://www.semas.or.kr">www.semas.or.kr</a> )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장보영 과장 (044-215-7310)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박은주 과장 (042-481-4534)	임영주 사무관 (042-481-4566)
❸ 신용보증기금출연 ( <a href="http://www.kodit.co.kr">www.kodit.co.kr</a> )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장보영 과장 (044-215-7310)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중기부 기업금융과	황영호 과장 (042-481-4545)	최호성 사무관 (042-481-4586)
❹ 기술보증기금출연 ( <a href="http://www.kibo.or.kr">www.kibo.or.kr</a> )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장보영 과장 (044-215-7310)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이옥형 과장 (042-481-4383)	여현구 사무관 (042-481-5174)
❺ 긴급경영안정자금 ( <a href="http://www.kosmes.or.kr">www.kosmes.or.kr</a> )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장보영 과장 (044-215-7310)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중기부 기업금융과	황영호 과장 (042-481-4545)	윤성웅 사무관 (042-481-4382)
❻ 고용유지지원금 ( <a href="http://www.ei.go.kr">www.ei.go.kr</a> )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허성용 사무관 (044-215-7232)
	고용부 고용장려금TF	김부희 과장 (044-202-7210)	백경남 사무관 (044-202-7229)
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a href="http://covid19.ei.go.kr">covid19.ei.go.kr</a> )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허성용 사무관 (044-215-7232)
	고용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명석 과장 (044-202-7368)	박경구 사무관 (044-202-7381)
❽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a href="http://www.youthcenter.go.kr">www.youthcenter.go.kr</a> )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이성택 사무관 (044-215-7233)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김문실 과장 (044-202-7432)	윤명원 사무관 (044-202-7493)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9 구직급여 (고용센터 방문)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주휘택 서기관 (044-215-7231)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명석 과장 (044-202-7368)	임경희 사무관 (044-202-7374)
10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자체 홈페이지)	기재부 행정예산과	남동오 과장 (044-215-7410)	김남희 사무관 (044-215-7411)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이화진 과장 (044-205-3902)	김효빈 사무관 (044-205-3908)
1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www.bokjiro.go.kr)	기재부 복지예산과	김태곤 과장 (044-215-7510)	최상구 사무관 (044-215-7511)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설예승 과장 (044-202-3051)	신태환 사무관 (044-202-3052)
12 내일키움 일자리 지원 (광역자활센터 방문)	기재부 복지예산과	김태곤 과장 (044-215-7510)	최상구 사무관 (044-215-7511)
	복지부 자립지원과	최종희 과장 (044-202-3070)	김혜지 사무관 (044-202-3073)
13 아동특별돌봄지원	기재부 복지예산과	김태곤 과장 (044-215-7510)	김형은 사무관 (044-215-7512)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 (044-202-3410)	임태근 사무관 (044-202-341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 (044-203-6526)	신동진 사무관 (044-203-6946)
1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www.moel.go.kr)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허성용 사무관 (044-215-7232)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이현옥 과장 (044-202-7470)	정승연 사무관 (044-202-7473)
15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www.ei.go.kr)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장윤정 과장 (044-215-7230)	허성용 사무관 (044-215-7232)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준하 과장 (044-202-7496)	김송이 사무관 (044-202-7497)
16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www.smartchoice.or.kr, 잠정)	기재부 정보통신예산과	이성원 과장 (044-215-7390)	성인영 사무관 (044-215-7391)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남석 과장 (044-202-6650)	이현우 사무관 (044-202-6655)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